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0일, 황정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2.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황정아의원)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은 이러한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

정할 경우 관련 사업의 기획·수행·성과관리 등을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수행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기능·업무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해 보임.

특히 현행법상 활용 장려 시책(§17의2①)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17의2②)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장려를 위한 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명시하도록 자구를 정비하여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위원)

개정안은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